[변경대비표]

1. 펀드명: 타임폴리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

2. 작성기준일 : 2025.01.08

3. 정정사유 :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모형사용))
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(2024.01.25 시행)
-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(2025.01.01 시행)
-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
-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

4. 효력발생일 : 2025.02.07

<신탁계약서>

| 항 목 | 정정사유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|
|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| L 수소시 ()]선 | | 집합투자업자 :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|
| 제 21 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| | <추가> | ①신탁업자는요구해야 한다. 다만,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 |

<일괄신고서>

| 항 목 | 정정 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 | 정정사유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|
| <투자결정시 유의사 항 안내> | 아니오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 | 7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 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, 특히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 는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</u> 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 습니다. | | |
| 요약정보 | | | | | |
| 투자위험등급 | 아니오 | 표시 및 설명·확 인에 관한 규정 | |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<삭제> 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 품이며,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 | |
|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 | |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업데이트 | |

| 운용전문인력 | | | | |
|--|---------|--|--|--|
| 5 T T O O U = | | | | |
| 투자자 유의사항 |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 | 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 배당상품이며, 신중을 기하여 주 |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<삭제> 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 품이며,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 |
| 주요투자위험 - 원본손실위험 | | 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| | 투자신탁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삭제> 보호되지 아니하며, 특히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|
| | | | 습니다. | <u> </u> |
| 제 2 부. 집합투자기구 | 구에 관한 시 |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|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업데이트 |
| 4. 집합투자업자 가. 회사의 개요 | | 주소지 이전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4, 19 층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, 16 층 |
|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| |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업데이트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| | M그너워기기 | 판매하는 경우에도 <u>예금보험공사</u> 등의 |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<u>예금자보호법</u>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가. 일반위험 |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 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4.01.25) |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 |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 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| 아니오 | 기준 변경(최근 결산일 기준 이 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 → 일간수 익률의 최대손 실예상액(97.5% | ■ 수익률 변동성 기준 <변경 전 1> | (3) 수익률 변동성 기준 (설정 후 3 년 이 경과한 경우) <변경 후 1> |
| 13.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| | Var 모형사용))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| _ | 업데이트 |
| 14.이익배분 및 과 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·별도의 소득과 세 부담이 없는 것 이 원칙 | | 소득세법 제 57 조의 2 및 법인 세법 제 57 조의 2 개정사항 반 영(2025.01.01 시행) | |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 등)가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강하여 원천 징수 합니다. (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) |
| | | |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환급세액 =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* *환급비율 : (과세대상소득금액/국외원 천과세대상소득금액) 단, 환급비율/1 이 면 1, 환급비율 <0 이면 0 으로 함 | |
| 제 3 부. 집합투자기구 | 구의 재무 및 | ! 운용실적 등에 | 관한 사항 | |
|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| 아니오 |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| _ | 업데이트 |

| 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| | | | |
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| | 주소지 이전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4, 19 층 -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, 16 층 업데이트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 | 아니오 |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업데이트 |
| 2. 운용관련 업무 수 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) 집합투자재산 관 리에 관한 사항(신탁 업자) 나. 주요업무 | | 가이드라인 제 34 조 | 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집합투자재산요구하여야 합니다. | (2)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 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집합투자재산요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. |

<u><변경 전 1></u>

■ 수익률 변동성 기준

| 1 1 2 2 3 3 2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위험등급 | 분류기준 | 표준편차 | |
| 1 | 매우 높은 위험 | 25% 초과 | |
| 2 | 높은 위험 | 15% 초과 25% 이하 | |
| 3 | 다소 높은 위험 | 10% 초과 15% 이하 | |
| 4 | 보통 위험 | 5% 초과 10% 이하 | |
| 5 | 낮은 위험 | 0.5% 초과 5% 이하 | |
| 6 | 매우 낮은 위험 | 0.5% 이하 | |

^{1. &}quot;수익률 변동성 기준"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u><변경 후 1></u>

(2)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

| 변경일 | 위험등급 | 변경사유 |
|-----|------|------|
| | | |

(3) 수익률 변동성 기준 (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)

| 위험등급 | 분류기준 | 97.5% VaR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1 | 매우 높은 위험 | 50% 초과 |
| 2 | 높은 위험 | 50% 이하 |
| 3 | 다소 높은 위험 | 30% 0 ਰੇ\ |
| 4 | 보통 위험 | 20% ଠାରି |
| 5 | 낮은 위험 | 10% ଠାରି |
| 6 | 매우 낮은 위험 | 1% 이하 |

^{1) &}quot;수익률 변동성 기준"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시 마다 재산정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) "97.5% VaR"는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√250)를 곱해 산출하며, VaR(Value at Risk)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. 상기 표상 VaR값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(신뢰구간 97.5%)을 의미합니다.